[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구 ○○로 ○○○, ○○○호(청천동, 신부평자동차매매단지)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체 대표자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前 사업주로부터 양수받아, 2016. 11. 10. 피청구인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2016. 11. 30.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11.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7.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취소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사업 취소된 사실을 알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고, 변명의 기회도 없는 일방적인 영업취소는 부당하며,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빈 사무실같이 보였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7. 7. 11. 청구인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등기우편물 수령인인 “○○○”(을제3호증 2페이지)은 청구인의 회사 동료가 아닌 전혀 모르는 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인이 떼어버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업취소 명령서 부착상태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조합이 아니므로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양수인)과 청구 외 ○○○(양도인)간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면서(을제1호증의1 참조) 붙임서류로 조합가입을 의무로 하지 않은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영업은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청구인의 매매알선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상품용 차량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거래된 차량이 없었다는 것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취소처분의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제1호증의2)를 보면, 하단에 최초등록일이 2000. 3. 29.로 기재되어 있기에 2016. 11. 30.이 등록일이 될 수는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기에 양도인인 ○○○

○(○○○)가 영업을 진행한 부분(갑제1호증)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의하면 양수하는 자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 가사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본문은 재량규정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청구 외 ○○○)에게 송달된 것이고, 이 사건 취소처분의 존재도 임대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므로(갑제2호증) 청구인에게 위 청문절차에 대한 서류가 송달되었음을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타 거래업체 방문 및 핸드폰 번호이동으로 사업취소명령서가 부착되었음을 보지 못한 청구인에게, 사전처분이나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업취소명령서를 부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처분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위에서 언급한 바 매매알선 영업에 주력한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나 사업취소명령서를 보지 못한 귀책사유는 없다.

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재량규정이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양수인인 점, ② 이 사건 업체가 ○○○○년경에 최초로 등록된 점, ③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알선에 주력하여 자동차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의무적 취소처분의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④ 등록취소로 인해 얻은 공익보다 청구외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받은 청구인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⑤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목

적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처분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17. 7.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17. 7. 28.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취소명령서를 부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5. 31.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16. 11. 30. 자동차매매업체로 등록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직전까지도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상품용 차량을 제시하지도 않음에 따라 거래된 차량이 없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매매업 영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업체로 등록하고서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올바른 관리질서를 위하여 등록취소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12.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며, 2017. 7. 14. 동료에게 송달되었음

에도 청구인은 2017. 7. 25. 에 실시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아 2017. 7. 26.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유선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2017. 7.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취소명령서를 부착하였다.

마.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80호 서식의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54조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등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새롭게 검토하여야 한다. 즉, 등록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여 그 기준에 충족한 경우에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결격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 청구인의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된 2016. 11. 30.이 사업의 개시일이라 할 것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제55조제3항, 제66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11. 10.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11. 30.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11.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는 이 사건 업체의 주소지로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한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우편국에서는 청구인의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였다는 청구 외 ○○○에게 배달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회사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은 2017. 7. 25.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의견제출도 없었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취소)를 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취소 명령서를 부착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5. 3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은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 제2호는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고, 그 [별표] 5.가.2)는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과 상품용 차량을 제시하지도 않음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2017. 7. 11.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의 통지는 이 사건 업체의 주소지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한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우편국에서는 청구 외 박○○에게 배달하였으나 박○○이 청구인의 회사동료라는 증거는 불충분하고, 그 결과 피청구인이 2017. 7. 25. 실시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에 청구인은 참석하지 못했고 의견제출도 할 수 없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7. 26.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 후 6개월 이내 사업개시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취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수령하지 못했고 사업장에 부착한 사업취소명령서도 보지 못했으며 사업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임차한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과의 소송 진행 중 그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 7.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취소)을 하였고, 2017. 7. 28.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취소 명령서를 부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8. 5. 31.자 이 사건 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사무원 등)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대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와 같은 교부송달방법을 충족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사업장 방문 사업취소명령서 부착의 방법을 사용한 점 ③ 그 전에 사전통지절차에서도 청구인 본인이 불참하여 사전절차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 ④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렇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은 물론,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로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대판 1990.7.13. 90누2284)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각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청구인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였지만, 회사동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무원등”에 해당하는 자라는 증명책

임은 통지서의 송달을 의뢰한 피청구인과 우편당국에 있고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사무실을 비운 기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되지 않았고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자동차매매실적도 없어 청구인이 영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조합에 등록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조합에 등록을 함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은 핸드폰이 망가져 번호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피청구인이 양도·양수신고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긍정할만한 점이 있다.

(4)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여기에서의 등록은 최초 등록일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양수받아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 외 ○○○만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사업개시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휴업의 경우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어로 되어 있어 양수인은 마음대로 휴업하여도 된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양수인이 신고를 하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 및 별책5)에 등록이 되므로 양수인도 등록 후 6개월 이내 사업개시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서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실적이 없었음을 들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따라서 매매가 아니라 매매 알선에 주력하는 경우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매 알선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점만 주장할 뿐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6)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2호 위반의 경우는 필요적 취소로 규정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에 사전통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청구인은 매매알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등록의 취소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절차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